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 투자신탁 제1호[주식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22. 11. 01
3. 주요 변경 사항 :
 - 집합투자업자 보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 신설
 -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4. 변경사항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부칙	<u><신설></u>	<p><u>제 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특례)</u></p> <p><u>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</u></p> <p><u>2. 적용대상 :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</u></p> <p><u>3. 적용시기 : 2022년 11월 01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 및 환매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의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(220178)에 의거하여 제43조 및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.</u></p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>	<p>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(중간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u>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중간생략)</p> <p><u>12. 이 투자신탁은 주로 러시아 및 러시아 관련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머징 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의 불안정성에 따라 더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른 해외증권시장의 거래량 부족, 자산가치 손실 등의 원인으로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요약정보		
투자비용	<u><신설></u>	<p>※ <u>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① <u>이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서 제3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집합투자업자보수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</u>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0%</u></p> <p><u>2. 적용대상 :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</u></p> <p><u>3. 적용시기 : 2022년 11월 01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 및 환매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39조제3항의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(220178)에 의거하여 신탁계약서 제43조 및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④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.</u></p>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<u>2022년 11월 01일</u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 <u>집합투자업자 보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 신설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u><신설></u>	<p>※ <u>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① <u>이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서 제3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0%</u></p> <p>2. <u>적용대상 :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</u></p> <p>3. <u>적용시기 : 2022년 11월 01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 및 환매청구를 재개하는 날의 전일까지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39조제3항의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(220178)에 의거하여 신탁계약서 제43조 및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④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.</u>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) 운용자산규모	-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<u><신설></u>	<p>※ <u>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의 한시적 인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① <u>이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서 제3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0%</u></p> <p>2. <u>적용대상 :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</u></p> <p>3. <u>적용시기 : 2022년 11월 01일부터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 및 환매청구를 재개하는</u></p>

		<p><u>날의 전일까지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39조제3항의 집합투자업자 보수율을 적용합니다.</p> <p>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(220178)에 의거하여 신탁계약서 제43조 및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집합투자업자,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.</p>
운용전문인력	-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효력발생일	-	<u>2022년 11월 01일</u>